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49호 2014.10. 6.(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5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1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133호 주택임대관리법 등록사항 공고 ----- 35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 - 152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0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승학로402번길 13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0. 0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10-0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검암동 658-12	승학로402번길 13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연희동 767-17	청라에메랄드로149번길 11-1	2010-11-05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1,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원창동 437-32	북향로363번길 26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 서구 검암동 649-3	승학로506번안길 83	2009-08-28	승학로50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 서구 오류동 1649-7	보듬4로 13	2012-10-19	보듬로에서 네번째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오류동 1645-14	검단로54번길 10	2012-10-19	검단로 시작지점부터 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 서구 오류동 1647-11	보듬2로 19	2012-10-19	보듬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8	인천 서구 불로동 481-4	검단로 722-31	2008-11-21	현 금곡동 첫골마을 뒷산 사자봉 남쪽 기슭에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지명 부여	
9	인천 서구 불로동 711-2	서곶로 908-28	2009-08-28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10	인천 서구 원당동 494-1	원당대로 983-35	2008-11-2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5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10. 0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인천 서구 가정동 510-18	가남로 399	2014-09-22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127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9. 3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민선6기 구정목표 달성 및 적극적인 공약사항 적극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기능 강화
- 일부기구를 수행업무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 및 기능 조정

#### 2. 주요내용

- 안전관리분야 기능 보강
  -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총괄실로 명칭 변경 및 부구청장 직속으로 재편
  - 안전 및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및 총괄 지휘를 위하여 재난대응팀 신설하고, 안전마을만들기 사무 추가
- 명칭변경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복지과
  - 가정복지과 ⇒ 여성보육과

## ○ 기능 조정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 기초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 복지정책과
- 가정복지과 : 노인복지팀 ⇒ 사회복지과

## ○ 사무 조정

- CCTV관제센터 운영 : 기획예산실 ⇒ 안전총괄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3.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4.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5.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6.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
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8.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9. 비상대책 업무
10.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11.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제6조 제1항 중 “안전관리과”를 삭제하고, 제2항 중 제61호부터 제70호까지와 제82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각각“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실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각각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희망복지지원담당”을 “복지자원연계담당”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u>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국, 문화복지국, 도시관리국</u>을 둔다.</p> <p><u>&lt;신 설&gt;</u></p>	<p>제3조(실·국의 설치) ----- ----- <u>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u> ----- -----.</p> <p>제5조(<u>안전총괄실</u>) 안전총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u></li> <li>2. <u>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u></li> <li>3. <u>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u></li> <li>4. <u>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u></li> <li>5. <u>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u></li> <li>6. <u>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u></li> <li>7. <u>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u></li> <li>8. <u>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u></li> <li>9. <u>비상대책 업무</u></li> <li>10. <u>재해구호에 관한 업무</u></li> <li>11. <u>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u></li> </ol>
<p>제6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인재육성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u>안전관리과</u>를 둔다.</p> <p>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제6조(총무국) ① ----- ----- ----- ----- <u>&lt;삭 제&gt;</u>-----.</p> <p>② ----- -----.</p>

<p>1. ~ 60. (생략)</p> <p>61. <u>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u></p> <p>62. <u>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u></p> <p>63. <u>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u></p> <p>64. <u>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u></p> <p>65. <u>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u></p> <p>66. <u>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u></p> <p>67. <u>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u></p> <p>68. <u>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u></p> <p>69. <u>비상대책 업무</u></p> <p>70. <u>재해구호에 관한 업무</u></p> <p>71. ~ 81. (생략)</p> <p>82. <u>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u></p> <p>제7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u>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건과, 위생과, 청소행정과</u>를 둔다.</p>	<p>1. ~ 60. (현행과 같음)</p> <p>61. &lt;삭제&gt;</p> <p>18. &lt;삭제&gt;</p> <p>19. &lt;삭제&gt;</p> <p>20. &lt;삭제&gt;</p> <p>21. &lt;삭제&gt;</p> <p>22. &lt;삭제&gt;</p> <p>23. &lt;삭제&gt;</p> <p>24. &lt;삭제&gt;</p> <p>25. &lt;삭제&gt;</p> <p>61. &lt;삭제&gt;</p> <p>71. ~ 81. (현행과 같음)</p> <p>82. &lt;삭제&gt;</p> <p>제7조(문화복지국) ① -----  -- <u>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u> -----  -----  -----.</p>
---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1(안전총괄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중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복지정책과장”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로 한다.

제12조 중 “석남1동장”을 “연희동장, 석남1동장”으로 한다.

별표 1 구분청 사무분장표 중 “기획예산실”의 130번 “CCTV카메라 설치·운영”을 “CCTV카메라 설치”로 하고, “민원봉사과” 31번의 “아부터 하”를 “바부터 타”까지로 하고, 부서(기관)란 중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기획예산실”다음에 삽입하며, 분장사무 중 “33. 안전·재난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및 총괄 지휘, 34.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추진 35. 방법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신설하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각각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로 하고,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구분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생활보장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보호</li> <li>3. 불우 이웃돕기</li> <li>4. 급여의 실시(생업자금 및 수업료 지원 등)(삭제)</li> <li>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및 운영관리</li> <li>6. 국가보훈단체(구지부) 보조</li> <li>7. 주민복지 상담</li> <li>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개정 2012.02.24)</li> <li>9. &lt;삭제 2012.02.24&gt;</li> <li>10. &lt;삭제 2011.06.15&gt;</li> <li>1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및 기금운영 관리</li> <li>12. &lt;삭제 2011.06.15&gt;</li> <li>13. &lt;삭제 2011.06.15&gt;</li> <li>14. &lt;삭제 2011.06.15&gt;</li> <li>15. &lt;삭제 2011.06.15&gt;</li> <li>16. &lt;삭제 2011.06.15&gt;</li> <li>17.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li> <li>18. &lt;삭제 2011.06.15&gt;</li> <li>19. 재향군인회 및 6.25참전전우회에 관한 사항</li> <li>20. &lt;삭 제&gt;</li> <li>21. &lt;삭 제&gt;</li> <li>2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li> <li>23. &lt;삭 제&gt;</li> <li>24.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li> <li>25.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관리</li> <li>26. 사회복지 시책홍보·교육</li> <li>27.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관리 (개정 2011.06.15)</li> <li>28. &lt;삭 제&gt;</li> <li>29. &lt;삭 제&gt;</li> <li>30. &lt;삭 제&gt;</li> </ol>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생활보장과	31. <삭제 2011.06.15> 32.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 33. 지역특수사업개발·시행계획 수립 34. <삭제 2011.06.15> 35. <삭제 2011.06.15> 36. <삭제 2011.06.15> 37. <삭제 2011.06.15> 38. <삭제 2011.06.15> 39. <삭제 2011.06.15> 40. <삭제 2011.06.15> 41. <삭제 2011.06.15> 42. <삭제 2011.06.15> 43. <삭제 2011.06.15> 44. <삭제 2011.06.15> 45.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시설지원 46.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공고(개정 2011.06.15) 47. 행여자 관리 48.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49. 의료급여 자격관리 50. 의료급여기금 관리 51.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5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 5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및 관리 54.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55. 자활계획 수립 및 시행 56. 자활지원사업 추진 57. 자활사업 관리업 5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추천 59. 저소득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천 60. 자활기금 관리운영 61.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및 관리 62. 저소득가구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추천 63.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
노인장애인 복지과	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일반 3. 장애자의 편의시설 설치지도 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5.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노인장애인 복지과	6. 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 사업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8. 장애인 일자리 지원 9.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10.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1.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1.06.15> 15. <삭제 2011.06.15> 16. <삭제 2011.06.15> 17. <삭제 2011.06.15> 18. <삭제 2011.06.15> 19. <삭제 2011.06.15> 20. <삭제 2011.06.15> 21. <삭제 2011.06.15> 22. <삭제 2011.06.15> 23. <삭제 2011.06.15> 24. <삭제 2011.06.15> 25. <삭제 2011.06.15> 26. <삭제 2011.06.15> 27. <삭제 2011.06.15> 28. <삭제 2011.06.15> 29. <삭제 2011.06.15> 30. <삭제 2011.06.15> 31. <삭제 2011.06.15> 32. <삭제 2011.06.15> 33.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34. <삭제 2011.06.15> 35. <삭제 2011.06.15> 36. <삭제 2011.06.15> 37. <삭제 2011.06.15> 38. <삭제 2011.06.15> 39. <삭제 2011.06.15> 40. <삭제 2011.06.15> 42. <삭제 2011.06.15> 43. <삭제 2011.06.15> 41. <삭제 2011.06.15>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노인장애인 복지과	44. <삭제 2011.06.15>
	45. <삭제 2011.06.15>
	46. <삭제 2011.06.15>
	47. <삭제 2011.06.15>
	48. <삭제 2011.06.15>
	49. <삭제 2011.06.15>
	50. <삭제 2011.06.15>
	51. <삭제 2011.06.15>
	52. <삭제 2011.06.15>
	53. <삭제 2011.06.15>
	54. <삭제 2011.06.15>
	55. <삭제 2011.06.15>
	56. <삭제 2011.06.15>
	57. <삭제 2011.06.15>
	58. <삭제 2011.06.15>
	59. <삭제 2011.06.15>
	60. <삭제 2011.06.15>
	61. <삭제 2011.06.15>
	62. <삭제 2011.06.15>
	63. <삭제 2011.06.15>
	64. <삭제 2011.06.15>
	65. 급여의 실시(생업자금 및 수업료 지원 등) (신설 2011.06.15)
	66. <삭 제>
	67. <삭 제>
	68. <삭 제>
	69. <삭 제>
	70. <삭 제>
	71. <삭 제>
	72. <삭 제>
	73. <삭 제>
	74. <삭 제>
75. <삭 제>	
76. <삭 제>	
77. 장애인 연금 지원(신설 2012.02.24)	
78. <삭 제>	
79. <삭 제>	
80. <삭 제>	
81. <삭 제>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노인장애인 복지과	82.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 83.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84. 노인실비입소시설 이용료 지원 85. 매장 및 묘지에 관한 사항 86.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에 관한 사항 87.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88. 노인복지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9. 노인여가시설 등록 및 관리 90. 재가노인복지사업 91. 노인일자리아업 실시 및 지원 92. 불우노인 지원 및 결연사업 93. 노인 여가활동 지원 94. 노인건강진단 95. 경로사업 실시 지원 96. 기초연금 지원 및 관리 97.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98.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99. 노인복지관 지도감독 100.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1.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103.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관리 104. 보건 및 복지서비스(긴급지원 등) 연계업무 105. 서비스 실시·연계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여성보육과	1. <삭 제> 2.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총괄 (신설 2011.06.15)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여성보육과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신설 2011.06.15) 19. <삭 제> 20.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11.06.15) 21.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신설 2011.06.15) 22.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신설 2011.06.15) 23. 구립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24. 보육시설 설치 인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25. 구립 보육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26.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신설 2011.06.15) 27. 용자보육시설 사후관리 (신설 2011.06.15) 28. 보육종사자 임면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29. 보육시설 평가인증홍보 및 사후관리 (신설 2011.06.15) 30.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지도 및 관리 (신설 2011.06.15) 31.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관리 (신설 2011.06.15) 32. 지역사회 보육네트워크 구축 (신설 2011.06.15) 33.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및 관리 (신설 2011.06.15) 34.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관리 (신설 2011.06.15) 35.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인력개발 및 교육 (신설 2011.06.15) 36. 여성단체 육성 및 봉사활동 (신설 2011.06.15) 37. 성매매방지사업 및 상담소(보호시설) 관리 (신설 2011.06.15) 38. 가정폭력방지사업 및 상담소(보호시설) 관리 (신설 2011.06.15) 39. 성폭력방지사업 및 상담소(보호시설) 관리 (신설 2011.06.15) 40. 여성상담 및 요보호여성 관리 및 선도 (신설 2011.06.15) 41. 건강가정 생활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사항 (신설 2011.06.15) 42.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43. 한부모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신설 2011.06.15) 44. 아동복지시설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45. 요보호아동 관리 (신설 2011.06.15) 46.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및 관리 (신설 2011.06.15) 47. 소년소녀가장 관리 및 지원 (신설 2011.06.15) 48.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설 2011.06.15) 49. 기타 여성정책, 아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6.15) 50.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 (신설 2011.06.15) 51. 결혼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 (신설 2011.06.15) 52.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신설 2011.06.15)

부서(기관)	분 장 사 무
여성보육과	53. 여성권익증진사업 (신설 2011.06.15) 54.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신설 2011.06.15) 55.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신설 2011.06.15) 56.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신설 2011.06.15) 57.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신설 2011.06.15) 58. 성별영향평가 (신설 2011.06.15) 59.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신설 2011.06.15) 60.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11.06.15) 61. 드림스타트 대상자 관리 (신설 2011.06.15) 62. 드림스타트 복지 세부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1.06.15) 63. 여성복지연간계획의 수립(신설 2012.02.24) 64. 서구여성발전기금 관리(신설 2012.02.24) 65. 서구여성주간행사 추진(신설 2012.02.24) 66.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12.02.24) 67.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12.02.24) 68.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12.02.24) 69. 입양아동 등록 및 지원(신설 2012.02.24) 70.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지원(신설 2012.02.24) 71. 가정위탁센터 및 아동복지 시설 입소(신설 2012.02.24) 63.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개정(신설 2012.02.24) 64.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신설 2012.02.24)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실과별란 중 “가정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한다.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동장의 직급)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검암경서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석남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좌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가좌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검단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

제12조(동장의 직급) -----

-----  
-----

-----

----- 연희동장, 석남1동장-----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12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3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민선6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직렬을 조정하여 재배치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규칙안 별표)
  - 일반직 : 881명 ⇒ 881명(변동 없음)
    - 6급(중 2명) : 196명 ⇒ 198명 (행정 93명 ⇒ 95명)
    - 8급(△1명) : 260명 ⇒ 259명 (운전 13명 ⇒ 12명)
    - 9급(△1명) : 67명 ⇒ 66명 (사무운영 3명 ⇒ 2명)
  - ※ 직렬·직급 조정에 따른 소요 인건비 : 38,299천원 (내역 별첨)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보건지소	출장소	동
총 계		885	571	18	45	16	43	192
정무직 계		1	1	0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81	567	18	45	16	43	192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3	1	1	0	0	0
지방서기관		2	1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55	26	2	5	1	1	20
지방행정사무관		30	14	2				14
지방의무사무관		4			3	1		
지방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5	3					2
지방행정·보건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농업사무관		2	1					1
지방행정·환경·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녹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농업·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공업·시설사무관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6급 소계		198	154	3	9	3	8	21
지방행정주사		95	73	3			1	18
지방세무주사		6	6					
지방전산주사		1	1					
지방사회복지주사		6	6					
지방공업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보건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간호주사	3			3			
지방환경주사	6	6					
지방시설주사	18	16				2	
지방방송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4	3					1
지방행정·공업주사	2	2					
지방행정·농업주사	2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3	2				1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8	8					
지방행정·녹지주사	1	1					
지방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세무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주사	2	2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3	1		
지방간호·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주사	1			1			
지방농림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지방기계운영주사	1	1					
지방운전주사	4	3					1
지방사무운영주사	2	2					
<b>7급 소계</b>	<b>297</b>	<b>193</b>	<b>7</b>	<b>15</b>	<b>6</b>	<b>20</b>	<b>56</b>
지방행정주사보	101	61	3			0	37
지방세무주사보	29	23				6	
지방전산주사보	3	3					
지방사회복지주사보	24	19					5
지방공업주사보	9	8				1	
지방농업주사보	1	1					

지방복지주사보	5	5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15	9		4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4			3	1		
지방간호주사보	6			5	1		
지방환경주사보	10	10					
지방시설주사보	37	32				5	
지방방송통신주사보	3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6	6					
지방행정·농업주사보	4					3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1			1			
지방수의·농업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주사보	2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보	2				2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보	1	1					
지방전기운영주사보	1	0				1	
지방기계운영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18	4	1	1		1	11
지방사무운영주사보	9	4	1			2	2
지방속기주사보	2		2				
<b>8급 소계</b>	<b>259</b>	<b>160</b>	<b>4</b>	<b>14</b>	<b>5</b>	<b>13</b>	<b>63</b>
지방행정서기	111	72	2	1			36
지방세무서기	12	9				3	
지방전산서기	5	5					
지방사회복지서기	28	10					18
지방공업서기	5	5					
지방농업서기	1	1					
지방복지서기	3	3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서기	11	7		2		2	
지방의료기술서기	2			1	1		
지방간호서기	7			4	3		
지방환경서기	10	10					
지방시설서기	32	26				6	
지방방송통신서기	2	2					
지방행정·전산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3	2					1
지방행정·농업서기	1						1
지방보건·공업서기	1	1					

지방보건·간호서기	1			1			
지방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1				1		
지방환경·공업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서기	3			3			
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1	1					
지방운전서기	12	2	1	1		1	7
지방사무운영서기	3	1	1	1		0	
9급 소계	66	30	1	1	1	1	32
지방행정서기보	33	11	1				21
지방세무서기보	3	2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8	6		1			11
지방공업서기보	0	0					
지방복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1				1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5	5					
지방행정·환경서기보	1	1					
지방운전서기보	0	0					0
지방사무운영서기보	2	2				0	
별정직 계	3	3	0	0	0	0	0
5급상당 소계	0	0	0			0	0
일반비서	0	0					
6급상당 소계	1	1					
일반비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0			0	0
일반비서	1	1					
9급상당 소계	1	1					
일반비서	1	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 소	보건 지소	출장 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 소	보건 지소	출장 소	동
총 계	885	<u>570</u>	18	45	16	<u>44</u>	192	총 계	885	<u>571</u>	18	45	16	<u>43</u>	192
일반직 계	881	<u>566</u>	18	45	16	<u>44</u>	192	일반직 계	881	<u>567</u>	18	45	16	<u>43</u>	192
6급 소계	<u>196</u>	<u>152</u>	3	9	3	8	21	6급 소계	<u>198</u>	<u>154</u>	3	9	3	8	21
행정	92	71	3			1	18	행정	95	73	3			1	18
7급 소계	297	193	7	15	6	<u>21</u>	<u>55</u>	7급 소계	297	193	7	15	6	<u>20</u>	<u>56</u>
행정	101	<u>60</u>	3			<u>1</u>	37	행정	101	<u>61</u>	3			<u>0</u>	37
사무운영	9	<u>5</u>	1			2	<u>1</u>	사무운영	9	<u>4</u>	1			2	<u>2</u>
8급 소계	<u>260</u>	160	4	14	5	13	<u>64</u>	8급 소계	<u>259</u>	160	4	14	5	13	<u>63</u>
운전	<u>13</u>	2	1	1		1	<u>8</u>	운전	<u>12</u>	2	1	1		1	<u>7</u>
9급 소계	<u>67</u>	<u>31</u>	1	1	1	1	32	9급 소계	<u>66</u>	<u>30</u>	1	1	1	1	32
사무운영	<u>3</u>	<u>3</u>						사무운영	<u>2</u>	<u>2</u>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12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3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각 동에서 “어디서나 민원처리(FAX)”로 발급하고 있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직접 발급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 민선6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명칭 변경 및 폐지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안 별표 4)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사무 추가(세무1과)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관련사무 ⇒ 생활보장과
    - 가정복지과 모·부자 관련사무 ⇒ 여성보육과
    - 가정복지과 매·화장 관련사무 ⇒ 노인장애인복지과
  - 폐지된 사무 삭제
    -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권한 사무
    - 가정복지과 경로연금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무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실과별란 중 “가정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4]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18조의8  -같은 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세무1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노인장애인 복지과	1	매·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여성보육과	1	모부자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부자가정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나. 저소득 모부자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모부자가정 변동사항 관리	-모자복지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모자가정증명서 발급	-모자복지법 제9조의2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자원 순환과	1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권한 가. 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나.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신고		
	2	동 배치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3	이면도로 청소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조, 동법 제13조	
	4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	-폐기물관리법 제7조, 동법 제63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에 관한조례제17조 내지제25조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가정복지과	1~3	(생략)	(생략)		노인장애인지원센터	1~3	(생략)	(생략)	
[별표 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별표 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사회복지과	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권한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생활보장	1	<삭제>	<삭제>	
복지과	2	의료급여대상자 증명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생활보장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가정복지과	1	경로연금 및 경로우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연금 및 교통 수당 지급신청서 접수 나. 경로연금 대상자 확인조사	-노인복지법 제11조,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노인장애인지원센터	1	매·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모부자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부자가정 신규 신청사 초기상당 나. 저소득 모부자 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변동사항 관리	-모자복지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여성보육과	1	모부자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부자가정 신규 신청사 초기상당 나. 저소득 모부자 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변동사항 관리	-모자복지법 제10조 -같은 법시행 규칙 제6조	
	3	매·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여성보육과	2	모부가정증명서 발급	-모자복지법 제9조의 2	
	4	모부가정증명서 발급	-모자복지법 제9조의 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133호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공고

주택법 제5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우리구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02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상 호	대표자 성명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서구-자기관리형주택 임대관리업-1	2014. 10. 02.	주식회사 에스앤디 파트너스	최창욱	5억원	인천시 서구 라임로 17, 203호 (연희동, 청라힐데스하임 상가동)